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5#
----------	------

제출년월일 : 2008년 5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 보호자의 주소지가 타 지역일지라도 제천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하여는 학사 입사자격 부여로 지역학교 출신자에 대한 형평성 유지
- 인근 시·군과의 상생협력 도모

2. 주요내용

- 제천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주소가 타 지역일지라도 학사 입사자격 부여(신설)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붙임(지방자치법)

첨 부 1. 의안전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련법령 1부.

4.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보호자가 일정 기간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를
“보호자가 일정 기간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사 지원자가 제천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또는 졸업예정자)이어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입사생의 자격) ①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수도권 소재(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년제 이상 대학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으로서 입사생 선발공고일 현재 그 보호자가 일정 기간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p>	<p>제5조(입사생의 자격) ①_____</p> <p>_____</p> <p>_____</p> <p>_____ 그 보호자가 일정 기간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사 지원자가 제천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또는 졸업예정자) 이어야 한다.</p>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3장 조례와 규칙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4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규칙의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나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환부)하고, 재의(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자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 ⑦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 ⑧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8조 (보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전문)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천시 공고 제 2008 - 522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3. 21

제 천 시 장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보호자의 주소지가 타 지역일지라도 제천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하여는 학사 입사자격 부여로 지역학교 출신자에 대한 형평성 유지
- 인근 시·군과의 상생협력 도모

3. 주요내용

- 제천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주소가 타 지역일지라도 학사 입사자격 부여(신설)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4월 10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기획예산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2-921-2940 (제천학사), FAX 02-921-2941 담당자 : 김일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지방행정주 사보	기획예산팀장				
지방행정주사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입법예고 조례명 :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번호 : 제천시 공고 제2008-522호
3. 공고기간 : 2008. 3. 21 ~ 4. 10 (20일)
4. 공고매체 : 제천시보 및 제천시홈페이지(입법예고)
5. 공고내용 : 불임 참조
6. 공고결과
 - 조회수 : 107회
 - 의견제시자 : 없음

불임 : 공고문 1부. 끝